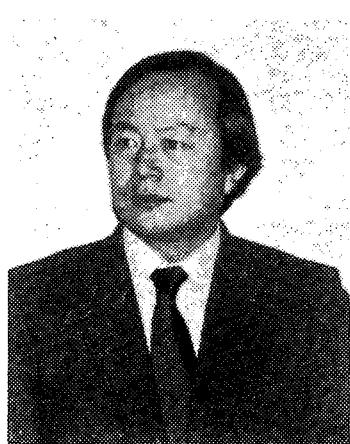


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수성과 문제점。^①



“

환경문제는 지금까지 대개 정부에서 해오던 바와같이 오염규제에 의존해서는 안된다.

”

구연창

〈경희大법대학장·法博·본보편집위원〉

I. 序論

環境이란 無限하거나 無盡藏한 것이 아니다. 만약 이를 무절제하게 利用·開發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環境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破壊되고 급기야는 우리의 生活의 安全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¹⁾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미연에 막고 環境問題에 적절히 對處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대개의 政府에서 해오던 바와같이 단순히 汚染規制에 의존함에 그쳐서는 아니된다.²⁾ 한 걸음 더 나아가 環境破壊를 事前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. 환언하면 環境의 利用·開發에 있어 그破壊를 事前에 회피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그破壊의 정도가 가장 적은 것을 택하도록 하는 制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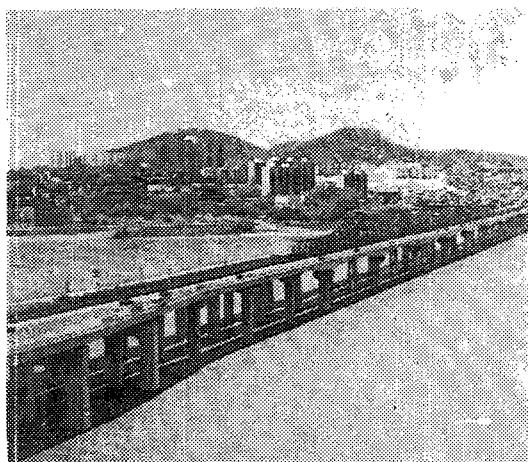
的 方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된다.

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여 최근에 새로이 고안·개발된 環境管理技術이 이른바 環境影響評價 (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) 的 제도이다. 이 제도를 確立시켜 立法化한 것은 美國으로서, 1969년의 國家環境政策法 (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: NEPA)³⁾에서 이를 채택하였다. 그 이후 世界各國에서 하나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으며,⁴⁾ 우리 나라에서도 1977년 環境保全法의 제정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.⁵⁾

「環境影響評價란 과연 무엇인가」에 관하여는 學者에 따라 저마다의 定義를 하고 있지만⁶⁾

일옹 「環境影響評價라 함은 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事業의 환경영향을 검토·분석하고 評價하여 그 否定的 영향을 除去 또는 減少시킬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하는 것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.⁹⁾

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環境影響의 分析을 그 근간으로 한다. 여기서 환경영향분석이라 함은 제안된 計劃에 의해 야기될 環境의 여러가지 生態·物理學的 特性과 社會經濟的 特性에 일어날 수 있는 變化를 연구하는 것인바¹⁰⁾ 이와 같은 분석을 요청하는 것은 제안된 計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당해 기관의 政策決定者, 一般市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議會와 大



<환경영향분석은 제안된 계획에 의해 야기될 환경의 여러가지 변화이다.>

統領에까지 環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해 주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.¹¹⁾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 사업의 計劃決定에 즈음하여 環境要因을 충분히 配慮도록 하려는 것이다. 환경영향평가는 결코 그 자체가 目的일 수 없으며, 따라서 정밀하게 잘 作成된 評價書의 作成 자체가 궁극 목적이 아니다.¹²⁾

우리 環境保全法上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根源의으로는 美國NEPA의 그것을 본받은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差異가 있다.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리 나라의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本質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美國의 制

度와 개괄적으로나마 比較하면서 그 特殊性을 살펴본 후, 우리의 現行制度의 問題點을 검토하고 그 改善方向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.

II. 韓國 環境影響評價法의 性格

1. 規制法上·節次法의 性格

各國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양각색이나 그 法의 性格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. 하나는 規制法의 性格의 것이고,¹³⁾ 다른 하나는 節次法의 것이다.¹⁴⁾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法令에서 그 적용을 받는者를 구속하는 기준 내지 조건이 마련되어 行政上 설치된 기관에 의한 許可·認可에 의하여 사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된 경우 이를 規制法의 性格을 가진다고 한다. 반면에 이러한 規制가敘이 단순히 事業을 실시하기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節次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節次法의 性格을 가진다고 한다.¹⁵⁾

환경영향평가법의 성격을 規制法으로 볼 것인가 혹은 節次法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내지 차이는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어느 쪽이 좋은 環境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가 라는 점에 그치지 아니하고 行政의 책임관계, 爭訟의 형태, 法院의 판단범위등에 까지 파급된다.¹⁶⁾ 그러나 이 두 法의 性格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計劃에 관한 決定을 하게 하는 行動經路에 있어서 누가 權限을 가지게 되느냐에서 찾아 볼 수 있다.¹⁷⁾

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規制法의 것으로 할 것인지 혹은 節次法의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나라의 特殊性, 경제사회의 실정, 환경설정, 법체제, 민주화에의 布石程度 등을 신중히 감안하여 검토되지 않으면 아니된다. 節次法의 性格의 것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良好한 환경을 維持·監視할 責務를 자각하고 적극적·민주적으로 參與할 수 있는 체제가 보장되어야 하며, 基準의 준수여부는 공정한 法院의 판단에 말기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한다. 다른 한편, 規制法의 性格의 것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한 環境汚染의 발생을 방지해온 기업이나 國家·地方自治團體에 대한 不信感이 깊어져서, 단

순히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일정기간 후에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節次法의 인 것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불안감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.¹⁶⁾

2.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의 性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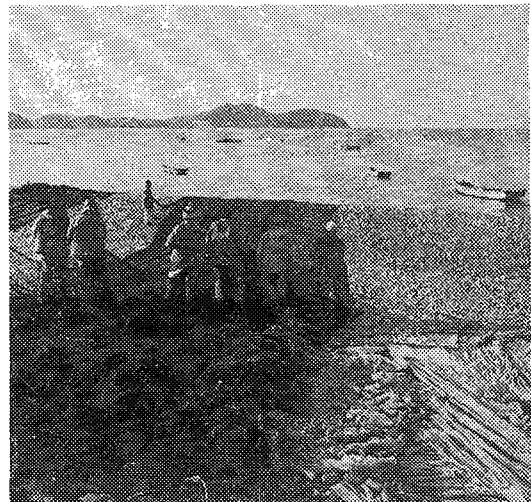
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 되었지만, 한동안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의 성격은 法令規定의 不明確性, 특히 法 제5조의 「協議」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規制法의 혹은 節次法의 인 것 중 그 어느 하나로 규정지음에 어려움이 있었다. 그러나 재정 당시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로 보아 法 제5조의 協議는 환경행정담당의 保健社會部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意見이나 諮問을 받는 정도로 이해되지 않을 수 없었다. 왜냐하면 協議를 통한 意見에 아무런 拘束力이 없었기 때문이었다. 따라서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의 성격은 節次法의 인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.¹⁷⁾

그러나 1980년 8월 改正된 環境保全法施行령에서는 그때까지 우리 영향평가법의 성격을 節次法의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을 規制法의 인 것으로 전환시켜 놓았다. 현행법하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절차를 보면 사업주관기관은 環境影響의 評價와 함께 評價書를 作成하여 環境廳長에게 協議要請과 함께 이를 제출한다. 환경청장은 이 평가서를 검토·심사한 결과 그 사업이 環境保全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諮問을 받아 사업주관기관의 長에게 사업계획의 調整·補完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사업주관기관의 長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 개정된 環境保全法施行령의 관계조항의 내용이다.¹⁸⁾

요컨대, 환경청장은 協議節次를 통하여 評價書의 適正性을 維持·確保하기 위한 일종의 規制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. 이는 전통적인 行政法學上의 協議概念에 하나의 變則의 내용을 부여한 것이며, 다른立法例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. 이렇게 許可나 認可制度를 채택하지 않으면서도 規

制法的 性格을 지닌 것으로 확립을 보게 되었다.

위와 같이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規制法의 性格이 부여된 연유는 다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. ① 環境廳當局이나 環境專門家들이 實効性



〈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근본적으로는 美NEPA의 것을 본받았지만 차이는 있다.〉

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을 열망해 왔으며 ②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사업주관기관의 환경영향평가능력이나 그 열성을 도저히 信賴할 수 없었으며 ③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法體制나 行政的 意思決定의 구조로 보아 市民의 參與나 法院의 介入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適正性維持가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④ 特別委員會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, 환경영향 평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規制權을 미흡하나마 環境廳에 부여한 것이다.¹⁹⁾

III. 評價對象의 限定性

1. NEPA下의 評價對象

美國市民들의 강렬한 環境保全에의 意志는 NEPA로 하여금 全面的인 (across-the-board) 接近方法을 채택토록 하여 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聯邦의 計劃, 立法案, 活動을 評價對象으로 하였다.²⁰⁾ 더구나 法施行

過程에서 評價對象을 넓혀 聯邦機關의 事業이나 活動이 아니더라도 (즉 州政府나 地方自治團體 등의 事業) 聯邦政府로부터 補助金을 받거나 認·許可를 要하는 경우에는 역시 NEPA에 의한 評價를 하도록 하였다.²¹⁾ 그리하여 NEPA에 의한 評價對象은 더욱 擴大되었다.

물론 위의 모든 活動이나 計劃에 관하여 環境影響評價書가 作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그 중 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限하여 評價書 作成이 要구된다. 따라서 聯邦의 事業이나 計劃 중에서 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與否를 判定하는 選別節次가 필요하게 된다. 이 節次가 바로 事業主管機關이 獨자적으로 시 행하는 이른바 環境影響評價要否判斷 (environmental assessment)의 절차적인 것이다.²²⁾ 이 절차에서 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있는 것으로 判定된 對象에 限하여서만 環境影響評價書 (EIS)가 작성되는 것이다.²³⁾

評價對象에 대한 NEPA의 이와 같은 姿勢는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一切의 活動이나 計劃에 관하여 全面的으로 檢討하려는 점에서 意義는 자 못 크다. 그러나 法施行에 대한 法院의 적극적인 關與와 함께 美國의 行政一般에 미친 충격은 너무나 커졌다.²⁴⁾ 이와 같은 경향을 지켜본 유럽諸國은 環境影響評價의 立法化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.²⁵⁾

2. 環境保全法下의 評價對象

우리 環境保全法은 評價對象에 관하여 限定的 列舉主義를 채택하고 있다. 즉, 環境保全法 제 5 조에서는 ① 都市의 開發, ② 產業立地·工業團地의 造成, ③ 에너지開發, ④ 港灣建設, ⑤ 道路建設, ⑥ 水資源開發이 그 評價對象으로 열거되어 있다. 그리고 同法施行令 제 4 조에서는 ⑦ 鐵道(地下鐵 포함)의 건설, ⑧ 空港(軍用 飛行場은 例外)의 건설, ⑨ 干拓, ⑩ 港灣浚渫, ⑪ 아파트地域의 開發, ⑫ 觀光團地의 開發이 열거되어 있다. 따라서 우리 法制下에서는 環境影響評價의 對象은 一見하여서도 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推定할 수 있는 위의 12種의 事業계획에 한하여서만 環境영향을 評價할 것

이 요구되고 있다.

評價對象이 綱羅의이 아니라는 점에서 事業의 環境保全을 위하여 철저하지 못하다는 批判을 받을 수 있지만, 선진제국에 앞서서 環境影響評價가제도를 과감하게 채택한 우리나라의 實情下에서는 적절한 立法態度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. 더구나 종래 政府의 事業만이 評價對象으로 되어 있던 것을 1981年의 環境保全法改正에서 評價主體를 公共團體 및 政府投資機關까지를 擴大시킴으로써 實質적으로 評價對象을 擴張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.²⁶⁾

우리의 環境影響評價법이 평가대상사업을 限定的으로 열거하였기에 對象事業의 種類는 明白하였지만, 事業의 規模等 구체적인 範圍에 관하여는 명백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評價主體에 의한 評價書作成要否의 判斷節次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.²⁷⁾ 그런데 1983년에 改正된 環境保全法施行令 제 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[별표 1]에서 評價書를 作成하여야 할 事業의 구체적인 範圍를 明定함으로써 評價對象의 범위를 確定시켜 주었다.

따라서 現行環境保全法下에서는 環境影響評價의 對象事業의 種類 및 規模등 範圍가 확장적으로 정해져 있다. 이와 같은 立法措置는 事業主管機關의 評價書作成要否判斷節次를 통한 評價回避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. 그러나 자칫하면 評價對象의 범위를 硬直化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. 따라서 評價對象에서 제외되는 法定한도 規模이내의 事業일지라도 環境廳長이 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評價書作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.

또한 일단 評價對象에서 제외된 범위의 사업이 完了된 후에도 같은 혹은 유사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내에 계획되는 경우에는 설후 그것만으로서는 평가대상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完了된 사업을 함께 고려할 때 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역시 뒤의 事業에 대하여는 評價書를 作成케 하는 立法措置의 補完이 필요하다. 그렇게 함으로써, 예전

대 아파트地域開發事業을 分割하여 時差를 두고 實施함으로써 評價書作成을 回避하는 것을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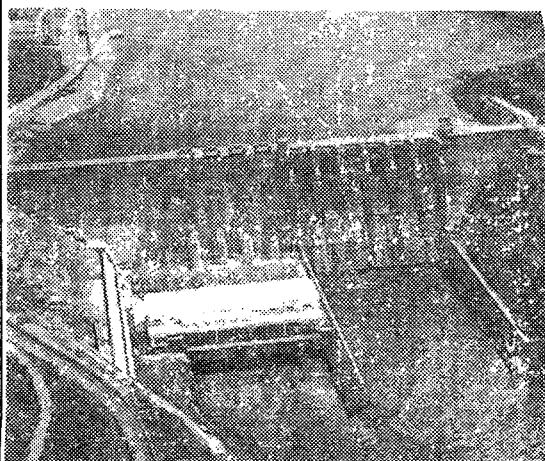
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實効性擴大量을 위하여 이제는 評價對象의範圍를 일정한 民間事業에까지 擴大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. 다만 事業에 따른 영향이 중대하고 현저한 경우만을 우선 그 對象으로 함이 바람직하다.

IV. 評價節次의 簡素化 및 非公開

1. NEPA下의 환경영향평가절차

NEPA의 制定直後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指針이 없어 한동안 혼란을 가져왔으나 CEQ의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 관한指針書²⁸⁾가 마련되어 이에 근거한 評價書作成 및 節次가 시행되어 왔었다. 그러다가 1976년 그때까지의 評價制度施行經驗에 대한 綜合的評價를 하였으며²⁹⁾ 이 評價結果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改善하기 위하여 CEQ는 새로운 規程³⁰⁾을 1978년 제정하였다. 이 規程에 근거한 評價節次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.

NEPA의 EIS節次의 첫 단계는 사업주관기관의 評價書作成要否判定節次이다. 聯邦의 사업주관기관은 통상적으로 EIS作成이 요구되거나 혹은 되지 아니하는 行爲를 제외하고는 전부「環



<우리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주요한 특징은
非公開性이다 - 사진은 충주댐 - >

境評價書」(environmental assessment)를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.³¹⁾ 이 書數는 EIS作成與否를 判定함에 필요한 資料의 提供을 위한 간결한 文書이다.³²⁾ 만약 이 評價書에 근거하여 EIS를 작성하지 않기로決定한 때에는 「主要影響不存在의 確認書」(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)를 작성하여야 한다.³³⁾

둘째 단계는 「範圍確定節次」(scoping)라고 하는 것으로써, EIS가 作成될 것으로 判定된 때에 취급될 문제점의 범위 결정과 제안된 행위에 관련된 주요문제의 확정을 위한 절차이다.³⁴⁾ 세째 단계는 위에서 정해진範圍에 따라 EIS草案을 作成하는 절차이다. EIS草案을 작성하는 상세한 기준이 CEQ規程에 규정되어 있다.³⁵⁾

네째의 단계는 作成된 EIS草案을 評價 받기 위하여 당해 계획에 관하여 利害關係를 가지는 모든 기관 및當事者에 送付한다.³⁶⁾ 주관기관이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評價 및 論評을 수집한 후, 이를 反映시켜 最終 EIS를 作成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送付하여야 한다.³⁷⁾

마지막 단계로서 EIS에 포함된 分析評價 및 기타 非環境的 要因에 근거하여 당해 行爲에 대한決定을 내리는 것이다. CEQ規程은 모든 代案이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환경적 장해를 피하거나 저감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모든 수단이 채택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간결한 「決定記錄」(public record of decision)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³⁸⁾

이상에서 본 EIS節次를 보면 그 절차가 두 차례의 評價書를 작성하는 등 비교적 복잡하고 신중한 편이며, 그 절차의 公開性이 주요 특징의 하나로 부각하고 있다.³⁹⁾ 그리고 EIS節次의開始에서부터 終了하기까지 그리고 行爲에 관한決定에 있어서까지도 環境影響에 대한配慮를 할 것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2. 우리의 環境影響評價節次의 特性

環境保全法下의 評價節次는 NEPA下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簡素化되어 있다. 즉, 사업주관기관의 評價 및 評價書의 作成節次와 環境廳長

과의 協議節次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. 첫째, 評價對象의 種類를 限定하였을 뿐만 아니라 規模등 구체적 範圍를 特定함으로써⁴⁰⁾ 評價書作成要否判定節次의 필요성을 排除하였다. 둘째, 1回의 評價書作成만이 요구되고 있다. 세째, 作成된 評價書는 環境廳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며, 다른 관계기관이나 利害關係人에게 提示할 것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. 네째, 環境廳長과의 協議節次 즉 檢討및 審查節次만으로 評價節次는 종료하게 된다.⁴¹⁾

우리 나라 環境影響評價節次의 주요한 特徵의 하나는 그 非公開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NEPA下의 評價節次에서 聽問會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현저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. NEPA下에서는 EIS節次 및 評價의 客觀性 및 適正性을 市民에의 公開를 통하여 보장시키려는 전통적인 民主的 思考가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.⁴²⁾ NEPA下의 환경영향평가법이 規制法的性格을 떠지 않고 節次法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기능을 발휘케 하는 주요 要因 중의 하나가 이 節次의 公開性이다. 이에 반하여 行政節次의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유독 環境影響評價만이 公開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. <다음호에 계속>

제3차 환경오염방지기술 해외연수참가요청

66

本協会에서는

'86. 7. 15~7. 17까지

3일간 英国에서 개최되는 '86
국제수질 및 공중위생설비 전시회에
해외연수단을 파견코자
하오니 각회원사의
참여를 권장합니다.

99

목적 : 영국 '86국제수질 및 공중위생설비 전시회

기간 : 1986년 7월 14일~7월 25일(11박12일)

경유지 : 런던→마드리드→로마→파리

참가인원 : 10명 이상 15명 이내

참가자선발기준 : 회원사 임직원 참가희망자 중 여권소지자 및
자체에서 여권발급이 가능한 자.

신청요령 : 접수처 : 본협회총무부(753-7669, 7640)

신청금 : ₩ 300,000(신청서 접수시 납부바라며
신청금은 여행경비에 포함됨)

신청마감 : '86. 6. 21(토요일)